

## 학 생 준 칙

제정	1996. 9. 1.
개정	2000. 9. 1.
개정	2002. 1. 1.
개정	2012. 3. 1.
개정	2014. 6. 1.
개정	2016. 3. 1.
개정	2018. 3. 1.
개정	2020. 4.13.
개정	2023. 3. 6.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준칙은 학칙에 근거하여 학생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장 학 생 증

**제2조(발급 및 재발급)** ① 학생증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발급한다.

② 재학 중 학생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되어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발급한다.

③ 학생증은 은행과 제휴(현금카드 겸용)하여 발급(재발급 포함) 할 수 있다.

**제3조(사용기간)** 학생증은 입학과 동시에 발급되며 졸업 시까지 유효하다.

**제4조(휴대)** 학생은항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대여금지)**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.

**제6조(발급 신청절차)** 학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고자할 경우 별도의 서식에 의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**제7조(무효 및 반납)** 학생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.

1. 자퇴, 제적 및 졸업인 경우
2. 기재(인쇄)사항을 임의 변경한 경우
3. 식별이 곤란한 정도로 오손되었을 경우

### 제 3 장 집회, 게시, 인쇄물

**제8조(행사의 허가)** 교내외를 막론하고 본 대학 학생의 모든 행사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9조(행사신고 및 결과보고)** 행사신고 및 행사결과보고를 소정양식에 의하여 학생담당 부서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스쿨(학과)행사의 경우, 스쿨(학과)원장에게 제출한다.

**제10조(지도위원 참석)** 모든 행사는 반드시 책임자가 참석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광고, 인쇄물의 허가)** 교내외를 막론하고 광고, 인쇄물을 제작, 배포,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담당부서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## 제 4 장 행사 참여

**제12조(행사참가)** 학생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
**제13조(행사의 참가허가)** 학생으로서 국내·외의 각종 행사에 참가코자 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사전에 소속 지도교수 또는 스쿨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스쿨원장 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이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
**제14조(행사참가 제한)** 시험기간 중에는 대내외 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. 단, 국제행사 및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.

**제15조(연합행사 제한)** 총장이 인정하는 연합행사 외에 외부단체와의 연합행사의 경우, 사안에 따라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.

**제16조(응원 및 지원)** 학생은 대외 행사에 단체로 응원할 경우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사안에 따라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.

## 제 5 장 생활 수칙

**제17조(용모)** 학생은 단정한 몸차림으로 등교해야 한다.

**제18조(신상 변경)** 학생의 신상에 대한 사항이 변경될 시는 바로 본인이 스쿨 행정실에 알려야 한다.

**제19조(이탈 행위 금지)** 학생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유흥장 등 출입으로 학생 신분에 이탈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.

**제20조(결석 신고)** 학생이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스쿨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 공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**제21조(학생준칙 준수)** 학생은 본 준칙 및 따로 정한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학업에 종사하고 덕과 교양을 길러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